

제413회 정례회  
'23. 11. 1.(수)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2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년 10월 4일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4일

3. 제안사유

○ 202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기관별 출연개요

연번	대상기관	출연목적 및 필요성	출연금액 (단위:천원)	관계법령 (출연근거)
계			8,265,308	
1	충북 연구원	-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 및 대안 제시 등 충북발전 정책 연구 를 위해 설립된 충북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	4,690,000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2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	- 지방 행정·재정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해 국가·지자체가 공동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	250,000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제3항
3	지방 공기업 평가원	-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과 기관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경영컨설팅 등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60,000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
4	한국 지방세 연구원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운영지원 필요	195,188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5	충북인재 평생교육 진흥원	- 지역인재 육성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기관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지원 필요	3,070,120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8조

## 5. 주요내용

### ① 충북연구원 운영 출연금 지원 : 4,690백만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 대안 제시 등 충북발전 정책연구를 위해 설립·운영되는 (재)충북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 : 250백만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지방 행정·재정·세제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전국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 ※ 17개 시·도 공동 출연사업

### ③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지원: 60백만원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 연구, 경영지도, 경영자문 및 경영평가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운영비 지원
- ※ 17개 시·도 공동 출연사업

### ④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 195백만원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
-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사업

### 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지원 : 3,070백만원

-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진흥 등 충청북도의 교육정책과 통합 교육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진흥원의 기관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6. 검토의견

### ① 충북연구원

#### 가. 충북연구원 현황

- 충북연구원은 지역 현안 조사·분석, 대안 제시 등 정책연구를 통하여 충북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0년 5월 설립되었음.
- 현재 충북연구원장 1명, 연구직 27명, 일반직 12명으로 총 40명의 인력을 갖추고 있음(2023년 9월말 기준).

#### <충북연구원 인력 현황>

(단위 : 명)

년도	구분	구분	정원	현원	비고
2020년		원장	1	1	43/42
		연구직	30	30	
		일반직	12	11	
2021년		원장	1	1	43/43
		연구직	30	30	
		일반직	12	12	
2022년		원장	1	1	46/43
		연구직	33	30	
		일반직	12	12	
2023년 9월말		원장	1	1	46/40
		연구직	33	27	
		일반직	12	12	

- 2023년 9월말 기준, 148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원 1명당 평균 5.48건의 연구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상임연구원의 연구실적은 총 562건임.

### <충북연구원 연구 수행 현황>

(단위 : 건)

구분 년도	계	1인평균 수행건수	기본과제	창의·기획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2020년	132	4.4	24	25	53	30
2021년	147	4.9	25	18	55	49
2022년	135	5.13	25	19	50	41
2023년 9월말	148(87)	5.48	27(25)	21(21)	44(15)	56(26)
합 계	562(87)	4.97	101(25)	83(21)	202(15)	176(26)

※ ( )는 진행 중인 과제 건수

#### 나. 주요내용 검토

- 충청북도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sup>1)</sup>과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sup>2)</sup>에 근거를 두고 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음.
- 충북연구원은 충북 지역의 주요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종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며 도정 발전에 기여해 왔음.
- 충북연구원 대상 출연금 규모는 총 46억9천만원으로 전년도 출연금 43억7천만원 대비 6.8%인 3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출연금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1)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2) 제6조(운영경비) ② 도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충북연구원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안)	증감
충북연구원 운영	4,040,000	4,340,000	300,000
공공투자분석센터 운영	330,000	350,000	20,000
출연금 계	4,370,000	4,690,000	320,000

<충북연구원 202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1) 세입 개요 (자체수입 + 출연금)

(단위 : 천원)

과 목		2024년	2023년	증감
합	계	6,014,421	5,843,736	170,685
자체수입	소 계	1,674,421	1,803,736	-129,315
	예금이자수익	20,000	9,000	11,000
	수탁과제전입금	833,700	741,468	92,232
	보조사업전입금	64,869	42,269	22,600
	공투센터전입금수익	62,000	32,829	29,171
	기금이자전입금수익	70,852	93,801	-22,949
	기타영업외수익	3,000	2,511	489
	보증금회수수입	0	190,000	-190,000
	순세계잉여금	620,000	691,858	-71,858
의존수입	출연금	4,340,000	4,040,000	300,000

## 2) 세출 개요 (필요경비)

(단위 : 천원)

과 목			2024년	2023년	증감
합 계			6,014,421	5,843,736	170,685
사 업 비 용	목적사업비	소 계	891,248	774,203	117,045
		자 체 사 업	349,800	352,100	-2,300
		기 획 사 업	541,448	422,103	119,345
	일반관리비	소 계	5,042,642	4,931,895	110,747
		인 건 비	3,507,142	3,436,369	70,773
		물 건 비	1,178,015	1,148,261	29,754
		경 상 이 전	357,485	347,265	10,220
	예 비 비	예 비 비	47,001	120,558	-73,557
	자 본 적 지 출	공기구비품	자 산 취 득 비	33,530	17,080

### 다. 종합 검토의견

- 충북연구원은 충북의 복잡하고 다양한 현안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 과제의 개발을 비롯한 각종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어 출연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충북연구원은 세입에 있어서 출연금 및 수탁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바, 다양한 수익사업을 발굴하는 등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현황

- 산업화와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지방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체계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1984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으로 (재)지방행정연구소가 설립됨.
-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연구원’)으로 변경되고(1986.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1986.5)이 제정·시행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의무가 법정화됨.
- 연구원은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평가 및 연구, ▶지방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 2024년 충청북도의 출연 요청액은 전년도와 같은 250백만원이며, 출연금 집행계획은 다음과 같음.

#### <출연금 집행계획(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기초	
합 계	250,000		
소 계(75.6%)	189,000		
인 건 비	189,000	•연구원 총액인건비(71억원) 2.7%	
소 계(16.0%)	40,000		
연구사업비	정책연구과제	10,000	•정책연구 개발사업 등
	시도현안과제	8,000	•현안과제 개발사업 등
	학술행사 등	12,000	•국내·외 세미나, 지방의정아카데미, 유관기관 및 시도연구원 협력사업,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지원 등
	발간사업 등	10,000	•지방행정연구, 지방자치이슈와포럼, 지방자치정책브리프, 지방의정브리프 등
소 계(8.4%)	21,000		
일반운영비	21,000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전산운영, 교육훈련, 시설비 및 청사관리비 등	



## 나. 검토의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sup>3)</sup>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 등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출연금 분담에 대한 대응으로 충청북도가 요청하는 분야의 협력연구를 매년 수행하고 있음.
  - ※ 출연금을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정책과제연구와 정책이슈리포트를 지원하고 있음.

### <정책과제연구 및 정책이슈리포트 수행 현황>

구분	연도	연구명
정책연구 과제 (시도별1건)		◆ 광역 시·도에 국한된 지역정책 중심의 연구에 더해 자치단체 간 상생적인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지역의 공통 현안을 연구
	2019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관리 구축 방안 연구(회계과)
	2020	농민수당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농업정책과)
	2021	정부 추가 특례 시군구 선정기준 관련 대응 방안 연구(자치행정과)
	2022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정책기획관) 충청권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률 향상방안 연구(정책기획관)
	2023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 설치타당성 및 활용방안 연구(인구청년정책담당관)
정책이슈 리포트 (시도별1건)		◆ 자치단체별 현안이슈 대응을 위해 자치단체의 환경을 고려한 컨설팅
	2019	생활SOC 정책의 긍정적 효과(사례) 및 효율적 운영방안(정책기획관)
	2020	청년수당 제도 도입 타당성 분석 및 실질적·효율적 지원 방안(청년정책담당관)
	2021	충북형 보통교부세 산정수요 발굴 및 교부세 확충 방안(예산담당관)
	2022	소방활동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소방본부 대응총괄과)
	2023	충북 소방활동 분석을 통한 소방력 운영 효율화 방안(소방본부 소방행정과)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매년 균등분담금을 출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미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시·도별 재정력, 인구수, 시·군수 등이 상이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을 출연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③ 지방공기업평가원

#### 가. 지방공기업평가원 현황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경영지도·자문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sup>4)</sup>에 따라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법인임.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sup>5)</sup>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고유사업 및 운영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음.

---

4)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기준: 재정력, 공기업 수 등
2. 지방공기업 출연금 편성기준: 매출액, 직원 수, 자산 등  
(2~3항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5~8항 생략)

- 2024년 출연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한 6천만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시·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 수		
	2023	2024 (A+B)	차액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b>합 계</b>	1,008	<b>1,002</b>	△6	<b>10.1570</b>	-	<b>498</b>	<b>376</b>	-	<b>504</b>
서울특별시	78	78	-	1.4075	4	42	32	3	36
부산광역시	60	60	-	0.7382	3	36	10	1	24
대구광역시	60	54	△6	0.6825	2	30	6	1	24
인천광역시	60	60	-	0.8043	3	36	15	1	24
광주광역시	54	54	-	0.5914	2	30	9	1	24
대전광역시	54	54	-	0.6126	2	30	6	1	24
울산광역시	54	54	-	0.5723	2	30	8	1	24
세종특별자치시	36	36	-	-	0.5	18	-	0.5	18
경기도	84	84	-	1.2363	4	42	97	4	42
강원특별자치도	60	60	-	0.4585	1	24	29	3	36
<b>충청북도</b>	60	<b>60</b>	-	0.5258	2	30	19	2	30
충청남도	66	66	-	0.5988	2	30	33	3	36
전라북도	54	54	-	0.4445	1	24	19	2	30
전라남도	54	54	-	0.4229	1	24	18	2	30
경상북도	66	66	-	0.4000	1	24	39	4	42
경상남도	72	72	-	0.6614	2	30	36	4	42
제주특별자치도	36	36	-	-	0.5	18	-	0.5	18

**나. 검토의견**

- 충청북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컨설팅을 통한 경영혁신 및 공공서비스 질 제고와 임직원에게 대한 전문교육 등을 통한 경영 합리화를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출연의 법적 근거 및 출연금 세부내역도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4 한국지방세연구원

### 가. 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

- 2011년 4월 개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sup>6)</sup>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임.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sup>7)</sup>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sup>8)</sup>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음.

### 나. 검토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출 대상인 보통세 세입의 증가에 따라, 출연금 산출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연의 법적 근거 및 출연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6)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7)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8)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충청북도 출연금 배분 내역>**

(단위: 천원)

자치단체명	① '22년 결산 지방세	② '22년 결산 보통세	'24년 출연금 (②*1.2/10000)
충북도 소계	3,495,831,685	3,250,383,776	390,046
<b>충북도 본청</b>	<b>1,871,991,265</b>	<b>1,626,565,832</b>	<b>195,188</b>
청주시	865,216,859	865,197,051	103,824
충주시	178,691,431	178,691,431	21,443
제천시	100,878,204	100,877,929	12,105
보은군	30,047,378	30,047,378	3,606
옥천군	40,423,198	40,423,041	4,851
영동군	34,533,801	34,533,801	4,144
증평군	41,468,098	41,468,065	4,976
진천군	126,324,874	126,324,027	15,159
괴산군	31,991,710	31,991,710	3,839
음성군	145,307,941	145,306,585	17,437
단양군	28,956,926	28,956,926	3,474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출연금 분담에 대한 대응으로 충청북도로부터 의뢰받은 지방세와 관련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참고 1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수행 현황

□ 연구과제 수행 : 총 1,132건 (2011년~2023년)

- 지방세수 확충, 지방세 관련 법제, 지방세 과세표준제도, 세외수입 제도 관련 기초이론 등 연구
- 정기 수요조사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실현 관심도가 높은 수시 요구사항을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연구 수행

### <연도별 과제수행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2011~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6
총 계	1,132	360	100	113	97	117	133	103	109
기 본	106	51	10	6	9	4	4	5	17
정책·수시	656	165	47	71	57	88	73	67	88
기 타	370	144	43	36	31	25	56	31	4

□ 최근 5개년 시도별 연구과제 과제 수행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행중)	
	의뢰	채택	의뢰	채택	의뢰	채택	의뢰	채택	의뢰	채택
계	96	45	120	65	75	55	124	59	140	81
서울	17	9	16	9	9	6	18	13	41	14
부산	17	3	9	6	8	6	3	2	11	5
대구	3	3	2	2	2	2	5	1	5	3
인천	7	1	8	6	8	6	10	4	12	9
광주	2	1	8	0	7	4	9	2	12	6
대전	2	1	6	1	5	5	7	3	4	3
울산	2	2	1	1	1	0	1	0	1	1
세종	3	1	2	1	3	1	5	1	4	2
경기	19	8	32	18	9	6	25	10	11	11
강원	1	0	4	1	4	3	8	5	13	9
<b>충북</b>	<b>5</b>	<b>2</b>	<b>7</b>	<b>3</b>	<b>7</b>	<b>5</b>	<b>12</b>	<b>3</b>	<b>4</b>	<b>3</b>
충남	2	1	5	3	2	2	5	4	7	2
전북	2	4	4	2	3	2	4	1	2	2
전남	3	1	2	2	0	0	4	2	5	4
경북	6	4	7	4	2	2	4	4	4	3
경남	2	1	6	5	2	2	2	2	3	3
제주	3	3	1	1	3	3	2	2	2	2

## 참고 2

## 시·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출연금 (A+B)	광역단체 (A)	기초단체			
			소계 (B)	시	군	구
합 계	13,078,569	8,570,298	4,508,271	2,957,527	388,634	1,144,109
서울	3,199,717	2,653,969	545,748	-	-	545,748
부산	746,014	583,445	162,569	-	-	162,569
대구	481,875	371,627	110,248	-	-	110,248
인천	669,357	529,453	139,904	-	-	139,904
광주	291,885	242,827	49,058	-	-	49,058
대전	292,306	236,941	55,365	-	-	55,365
울산	269,918	188,702	81,217	-	-	81,217
세종	95,188	95,188	-	-	-	-
경기	3,335,795	1,562,060	1,773,735	1,744,765	28,970	-
강원	356,606	213,999	142,606	101,444	41,162	-
<b>충북</b>	<b>390,046</b>	<b>195,188</b>	<b>194,858</b>	<b>137,372</b>	<b>57,486</b>	<b>-</b>
충남	566,554	294,925	271,629	227,062	44,567	-
전북	369,745	210,447	159,298	123,719	35,579	-
전남	474,022	265,339	208,683	132,778	75,905	-
경북	594,882	304,644	290,238	234,775	55,462	-
경남	727,863	404,748	323,115	273,612	49,503	-
제주	216,796	216,796	-	-	-	-

## 5 충청인재평생교육진흥원

### 가. 충청인재평생교육진흥원 현황

- 충청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충청인재양성재단과 충청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하여 2023년 1월 출범한 재단법인으로 「충청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8조<sup>9)</sup>에 근거하여 충청북도가 출연하고 있음.
- 현재 원장 1명, 사무처장 1명, 직원 18명, 기간제 1명으로 총 21명의 인력을 갖추고 있음(2023년 10월 기준).

#### <충청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직 급	정 원	비고
계	-	20	
원 장	-	1	
사무처장	-	1	
직 원	1 급	1	
	2 급	4	
	3 급	5	
	4 급	4	
	5 급	4	

9) 제8조(출연)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진흥원의 재산 및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나. 주요내용 검토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규모는 총 30억7천1십2만원으로 전년도 출연금 27억9천8백3십1만8천원 대비 8.8%인 2억7천1백8십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별 세부 출연 계획은 다음과 같음.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4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연도	담당	사업명	출연금액			비고
			2023년도	2024년도	증감액	
계			2,798,318	3,070,120	271,802	
1	경영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지원	1,661,318	1,870,120	208,802	계속
2	경영	충북인재평생교육 홍보 및 운영	15,000	50,000	35,000	계속
3	인재	글로벌 해외연수	180,000	-	△180,000	기금
4	인재	수도권 장학금 지원	180,000	-	△180,000	기금
5	인재	도내대학 장학금 지원	44,000	-	△44,000	기금
6	정책	충북 시민대학(1년차)	40,000	150,000	110,000	계속
7	정책	충북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7,000	10,000	3,000	계속
8	정책	평생교육 및 창의인재 정책연구	20,000	100,000	80,000	계속
9	정책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센터 운영	60,000	100,000	40,000	계속
10	정책	충북 미래인재교육포럼	20,000	20,000	-	계속
11	정책	평생교육 컨설팅 지원사업	10,000	20,000	10,000	계속
12	정책	디지털 영상자서전(도민 디지털 역량강화)	190,000	-	△190,000	폐지
13	정책	충북 교육통계 조사 분석	20,000	-	△20,000	폐지
14	정책	충북평생교육 및 미래인재 중장기 발전계획	20,000	-	△20,000	폐지
15	평생	충북문해교육센터 운영	50,000	100,000	50,000	계속
16	평생	제3회 충청북도평생학습박람회	-	50,000	50,000	신규
17	평생	충북 농업인 평생교육 운영·지원	-	50,000	50,000	신규
18	평생	지·산·학 연계 평생학습지원 강화	20,000	40,000	20,000	계속
19	평생	충청북도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	20,000	20,000	신규
20	평생	평생학습집중진흥지구 예비사업	-	20,000	20,000	신규
21	평생	환경·생태 평생교육 강화	30,000	40,000	10,000	계속

22	평생	고등평생직업교육 운영	40,000	50,000	10,000	계속
23	평생	평생학습형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공모사업	40,000	80,000	40,000	계속
24	평생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강화	30,000	60,000	60,000	계속
25	평생	충북평생학습 및 교육문화 촉진	46,000	40,000	△6,000	축소
26	평생	충북시민아카데미 운영	20,000	40,000	20,000	계속
27	평생	충북형 디지털 마을 생활연구소 프로젝트	20,000	40,000	20,000	계속
28	평생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15,000	20,000	5,000	계속
29	평생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	-	50,000	50,000	신규
30	평생	도민 온라인 교육콘텐츠 구입	-	50,000	50,000	신규
31	평생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	20,000	-	△20,000	폐지

## 나. 종합 검토의견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지역의 우수 인재 발굴·양성 및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출연의 법적 근거 및 출연금 세부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글로벌 해외연수, 디지털 영상자서전 등 사업의 폐지, 이관되었음에도 기존 사업 규모가 대폭 증액 또는 신규사업이 추가되는 등 전년대비 8.8%(2억7천1백8십만2천원)의 출연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바, 인력 현황, 사업별 사업계획 및 실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추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